# 예산규정

제정 2017. 3.22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"예산"이란 중장기 경영계획을 근간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주요 사업
  및 기타 경영활동을 수치화한 재무적 계획을 말한다.
- 2. "예산의 편성"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경영방침에 근거한 사업계획 및 승인예산 편성을 말한 다.
- 3. "운영계획의 수립"이란 예산의 편성에 따라 수립되는 연간 기본운영 계획 및 실행예산을 말한다.
- 4. "예산의 변경"이란 경영목표의 변동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의 총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예산의 조정"이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당초 배정된 예산 총액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6. "예산의 배정"이란 예산관리자가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운용부서에

대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행위 및 그 절차를 말한다.

- 7. "예산관리자"란 예산제도와 예산의 편성,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- 8. "부문예산관리자"란 소관예산을 책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 제3조(예산운영 원칙) ①예산은 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  - ②예산관리자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한다.
  - ③부문예산관리자는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소관예산을 운영하여야 하며, 자체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산의 구분) ①공사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1. 예산총칙
- 2. 종합예산 :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재무상태표, 자금계획서. 다만, 자금 계획서는 추정현금흐름표로 대체할 수 있다.
- 3. 부문예산 : 수익예산, 비용예산, 자본예산, 예비비
- ② 공사의 예산과목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제2장 예산의 편성

제5조(예산편성기준 통보) ①예산관리자는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 회 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」 통보 이전이라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시달할 수 있다.

- ②예산관리자는 중장기 경영계획 및 경영목표와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한 기준에 부서별 예산편성액 한도를 포함하여 통보 할 수 있다.
- 제6조(예산편성요구서의 제출) 부문예산관리자는 제5조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소관 사업 또는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하여 제5조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예산의 편성) ①예산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요구서를 종합·조정하고 경영목표와 정부의 경영지침에 따라 예산 안을 편성한다.
  - ②제1항의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. 이때 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
  - ③예산안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동되거나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 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은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.
  - ④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,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준예산) ①공사는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

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②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#### 제3장 운영계획수립

- 제9조(운영계획수립기준 통보) ①운영계획은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집 행지침」 및 제7조에 의한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되, 사업계획의 효율 적 수행과 공사 내외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예산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계획수립 기준을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」 통보이전이라도 운영계획수립 기준을 작성하여 시달할 수 있다.
- 제10조(운영계획 수립) ①각 부문예산관리자는 제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부문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부문별 운영계획을 종합·조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제출한 운영계획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
  - ③제7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

받아야 한다.

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된 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예산의 집행

- 제11조(집행원칙) ①사장은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.
  - ②예산관리자는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예산배정) ①예산의 배정은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월별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,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 또는 일반 경비는 수시 또는 추가 배정할 수 있다.
  - ②예산관리자는 예산운용상 필요한 경우 사장의 결재를 받아 배정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- 제13조(예산통제) ①예산관리자는 예산항목별로 예산액, 사용액 및 잔액을 기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.
  - ②예산통제는 금액 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, 항목, 수량. 내용 등 그 산출 근거와 정당성을 확인 통제하여야 한다.
  - ③예산통제의 기준 시점은 수익 및 비용예산은 발생주의, 자본예산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한다.

- 제14조(예산집행) ①예산관리자는 부문예산관리자로 하여금 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하여야 하며, 배정된 예산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과 관련하여 법인세, 세금과공과 등 예산총칙에서 별도로 정한 비목에 대해서는 배정예산을 초과계리 할 수 있으며, 경영 및 사업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배정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.
- 제15조(예산의 전용) ①예산집행 상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, 항,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에 의한 관,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- ③제1항에 의한 목간의 전용은 사장이 행한다.
- 제16조(예산운영 실적 분석 및 보고) ①예산관리자는 매월 운영계획과 진행 실적을 비교·검토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와 운영실적을 점검한다.
  - ②사장은 연간 예산 운영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예산의 이월) ①당해 예산액 중 미집행액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에 따라 이월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지출예산과 구분하여 집행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예비비)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. 단, 정부지침

에 따라 예비비에 계상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, 정·현원차 인건비 예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5장 예산의 효율적 운영

- 제19조(중장기재무계획) ①예산관리자는 공사의 비전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당해 연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예산관리자는 계획수립 이후 경영목표 변경 및 재무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신규예산사업) ①예산관리자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운 용부서가 추진하는 대규모 신규예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신규예산사업의 대상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신규예산사업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21조(성과예산사업) ①예산관리자는 제6조와 관련, 공사의 중장기 계획 및 전략목표와 연계한 예산사업을 수행하는 부문예산관리자로 하여금 목표달성을 중심으로 한 성과예산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성과예산사업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사장이 별 도로 정한다.

- 제22조(예산심의위원회) ①예산관리자는 제7조, 제10조, 제14조, 제16조, 제20조 및 제21조와 관련, 예산사업의 객관성, 타당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예산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23조(예산성과제고)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익증대, 비용절감 또는 이로 인해 예산성과를 제고시킨 경우이에 기여한 자 또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절감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 <2017.3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의 개정) ①「회계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 예산의 제15조 내지 제25조 규정은 삭제한다.

제2장 예산은 제2장 자금으로 변경한다.

②「이사회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3항 제7호 아목 "회계규정"은 "회계규정 및 예산규정"으로 변경한다.